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8년 9월 1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10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9. 10.(월)	담당부서	입지총괄과
담당과장	서가람 과장(044-203-4430)	담 당 자	최재홍 사무관(044-203-4432)

“산업단지 내 청년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대폭 확충”

- 「산업집적법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-

① 지원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“네거티브화”

②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자의 부담 경감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. 22. 발표한 **‘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’**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, **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**을 금일부터 **입법예고** (9.11~10.22, 40일)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**시행령 개정안**에 따르면,

①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.

○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등 **산업시설 중심으로 관리**되고, **노후화**되어 **편의·복지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**이 **부족**하고, 입주가 허용되는 **지원시설의 범위**도 근로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보다는 **기업 활동 지원용도**(컨설팅·마케팅 등)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.

- 산단 근로자들은 **식사나 편의시설 이용**을 위해 **원거리를 이동**해야 하는 등 **불편을 호소**해왔고, 특히 **청년들이 산단 내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**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.

○ 이에, 지원시설구역 내 **특별히 제한할 필요**가 있는 **업종**(카지노, 유흥주점 등)을 **제외**한 나머지 업종들의 입주를 **원칙적으로 허용**하는 **「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」** 도입하여 산업단지 내 **피씨(PC)방, 노래방, 펍(Pub),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**이 들어올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개선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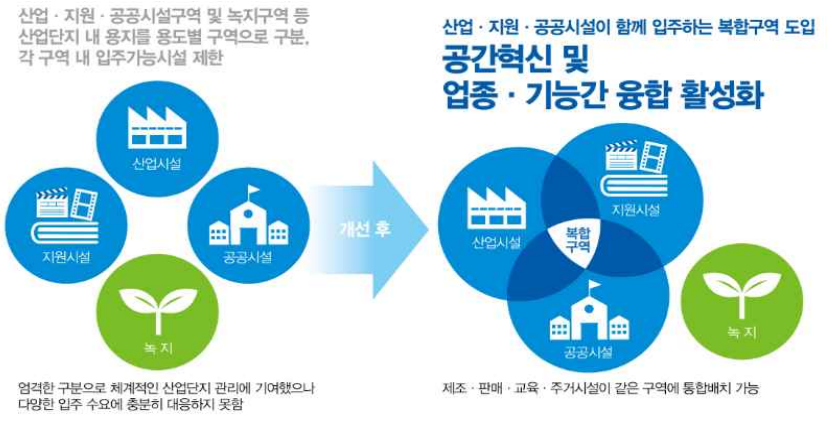
< (참고)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·시설 (예시) >

▸ 사행행위영업·대부업 ▸ 위락시설 ▸ 단독주택·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)	▸ 격리병원·묘지 관련시설 ▸ 교정 및 군사시설 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등

* 그 외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,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입주제한 가능

○ 또한, **청년들이 선호**하는 정보기술(IT)·지식산업 등의 비중이 높은 **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**을 현행 20%에서 **30%로 확대**하고, **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**의 경우에는 지원시설이 **최대 50%까지**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에 **지원시설이 충분히 입주**되어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.

< (참고) 복합구역 개요 >



◆ 산업시설·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복합입주가 가능한 구역(복합구역 전체 연면적의 50% 이상 산업시설 설치)

◆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 개정을 통해 근거규정 마련('14.12월)

②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한다.

○ 초창기에 개발된 산업단지일수록 **생산기능 위주로 설계**되어 **편의시설 및 공공시설**(어린이집·체육관·주차장 등) 등이 부족하나, 이를 **정부 재원만으로 확충하기에는 한계**가 있어 **민간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.**

- 그러나, **개발이익 환수 비용*** 등이 투자자에게 **부담으로 작용**하여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아 **지역에서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다.**

*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(총수익-총사업비)의 25% 이상을 공공부분에 재투자하여야 함

○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,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**비수도권 지역**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**개발이익 환수 비용의 50%를 감면**하고,

○ 산업단지 토지용도를 **복합구역**으로 변경할 경우, **실제로 용도변경**이 **이뤄지는 부분**에 대해서만 **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.**

* 현행 제도는 복합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투자 비용이 발생하였으나,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추가되는 용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토록 개선

- (예시) 산업시설구역에서 복합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, 복합구역 내 산업 外 시설에만 개발이익 산정

□ **산업부**는 앞으로 **다양한 의견수렴**과 함께 **법제처 심사, 차관·국무회의 의결** 등 제반 절차를 거쳐 **금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**할 계획이다.

□ 또한, **산업부**는 산업단지를 **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**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**기업과 근로자들의 요구사항**을 **적극 반영**하고, **민간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**는 **과감히 개선**해 나갈 것이며,

○ 규제개선과 함께 **'편의시설 확충사업'**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. ('19년 정부안 3,450억 반영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최재홍 사무관(☎ 044-203-44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**시행령 일부개정령안**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업을”을 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·농업·임업·어업·광업
2. 「사행행위 및 규제 및 처벌특례법」 제2조제2호의 사행행위영업
3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의 대부업
4.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.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

 가.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,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한다)

 나.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나목의 격리병원

 다.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은 제외한다)

 라.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

 마.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

바.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

사.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

아.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

6. 기타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를 제한하는 업종

제6조제6항제7호, 제8호, 제8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6조의4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.”를 “30.”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20에”를 “30에”로, “한다.”를 “한다.(법 제33조제6항 단서의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법 제33조제6항 단서의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

제58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해당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며, 그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. 다만, 복합구역의 개발이익 산정기준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.

$$(\text{총수익}-\text{총사업비}) \times \frac{\text{용도변경된 부분의 용지와 건축물의 매각수입}}{\text{전체 용지와 건축물의 매각수입}}$$

제58조의5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재투자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승인(변경승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받았거나 승인이 신청된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제58조의5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